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720

발의연월일: 2020. 11. 25

발 의 자:임호선·홍성국·김민철

문진석 · 김주영 · 이용우

박영순 • 이장섭 • 이정문

이학영 · 신정훈 의원

(119]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1년 전후로 3단계 부분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독일, 일본 등에서도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임시운 행허가의 근거와 부분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상용화 를 위한 자동차 성능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도로 운행과 운전자에 대한 의무사항 등을 규율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에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자동차"를 정의하고 자율주행자 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의 기 반이 되는 안전한 도로주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운전의 정의에 포함하여 현행 운전자의 의무사항 등 「도로교통 법」이 자율주행자동차에도 적용되도록 함(안 제2조제19호 및 제20 호 신설).
- 나.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여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의 운전전환요구에 대응하여 직접 차량을 조작하도록 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의 의무를 완화함(안 제50조의2 신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부터 제33호까지를 각각 제21호부터 제3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8호(종전의 제26호) 중 "조종을 포함한다"를 "자율주행시스템을 사 용 또는 조종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한다.

- 19.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주변 상황과 도로 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조작하는 등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한 자동화 장비,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한 일체의 장치로서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20. "자율주행자동차"란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0조의2(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등의 준수사항) ①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운전전환요구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 ②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 또는 조종하여 운전하는 경우

에는 제49조제1항제10호,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6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9호의2, 같은 조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156조제7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 같은 조 제11호부터 1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의 운전전환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지 아니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u> <신 설></u>	19.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주변
	상황과 도로 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조작하는
	등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한
	자동화 장비,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한 일체의 장치로서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시
	스템을 말한다.
<u><신 설></u>	20. "자율주행자동차"란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를
	<u>말한다.</u>
<u>19.</u> ~ <u>33.</u> (생략)	<u>21.</u> ~ <u>35.</u> (현행 제19호부터
	제33호까지와 같음)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	28
45조·제54조제1항·제148조·	
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	
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	
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	
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자율주

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 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156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에 처한다.

1. ~ 5. (생 략) <신 설>

<u>6.</u> ~ <u>12.</u> (생 략)

행시스템을 사용 또는 조종하 는 것을 포함한다)----.

제50조의2(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등의 준수사항) ①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 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운전전환요 구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대응 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운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 용 또는 조종하여 운전하는 경우 에는 제49조제1항제10호,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 5. (생략)
- 6.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의 운전전환요 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지 아 니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 자

7. ~ 13. (현행 제6호부터 제1

2호까지와 같음)